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건 설 안 전 특 별 법 안

검 토 보 고

《 건설사고 예방 및 건설안전 강화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60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316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총괄적 검토	4
나. 정의(안 제2조)	11
다.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29
라. 설계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1조)	39
마. 시공자등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42
바.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안 제17조 및 제18조)	54
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안 제20조 및 제21조)	65
아. 건설공사 시공과정 영상촬영(안 제20조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1
자.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안 제24조)	77
차.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81
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안 제30조)	92
타. 건설안전진흥기금(안 제33조)	97
파. 영업정지(안 제35조)	101

하.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및 업무 계속 (안 제36조 및 제37조)	106
거. 과징금(안 제38조)	111
너. 벌칙(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116
더. 시행일(안 부칙 제1조)	122

I.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제221316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5. 9. 22.

다. 회 부 일 : 2025. 9. 23.

2. 제안이유

건설공사는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공사 목적물(건축물·도로·철도 등)이 다양하며, 현장에서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건설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작업환경에 차이가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시공사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실제 사고로 인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

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나.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5조).

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마.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35조 및 제38조).

바.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

4. 검토의견

가.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총 7개 장, 46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건설안전특별법안 조문 체계】

건설안전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정보 공개 등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절 일반 원칙	
제7조 기본 의무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 등	
제9조 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제10조 안전자문사 선임	

건설안전특별법안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1조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4절 시공자등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3조 안전관리조직	
제14조 안전교육	
제15조 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제16조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8조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제6절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9조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3장 안전관리 활동	
제20조 안전관리계획 등	
제21조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22조 안전관리비	
제23조 스마트 안전관리 등 보조·지원	
제24조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제25조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4장 현장점검 및 건설사고 신고·조사	
제26조 건설공사 현장점검	
제2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28조 건설사고 신고	
제29조 건설사고 조사 등	
제30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5장 건설종사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등	
제31조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제32조 보험·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제33조 건설안전진흥기금	
제6장 보칙	
제34조 시정명령 등	
제35조 영업정지	
제3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37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업무 계속	
제38조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안	
제39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4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 청문	
제7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소규모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행정제재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 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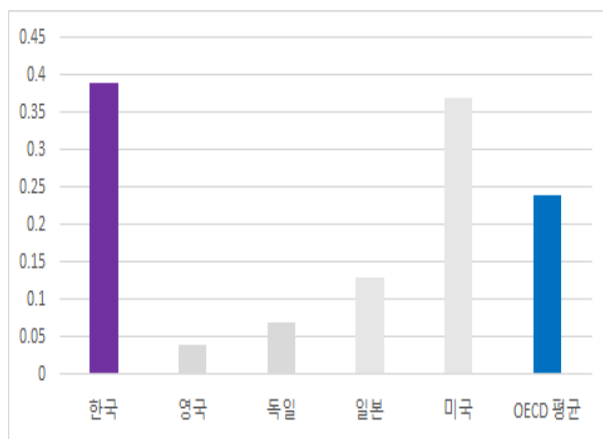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2023년도 사고사망만인율¹⁾은 0.39‰로 OECD 주요국가 평균인 0.24‰에 비하여 높고, 영국(0.04‰), 독일(0.07‰), 일본(0.13‰)의 사고사망만인율과 비교하면 3.0~9.8배에 해당하는 수준임.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2024년 1.57‰)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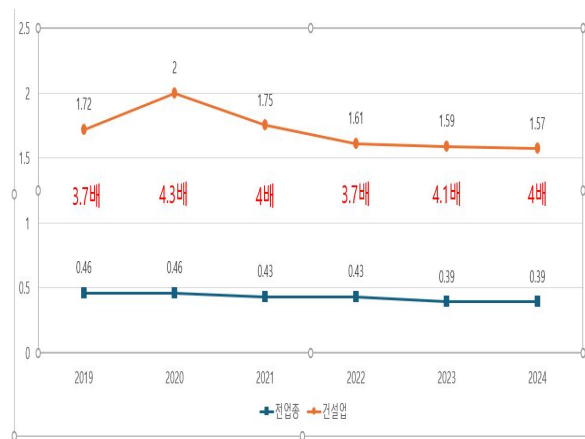
1) 사고사망만인율(‰) = 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2024년 0.39‰) 대비 약 4배에 해당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임.

【 OECD 주요국가 사고사망만인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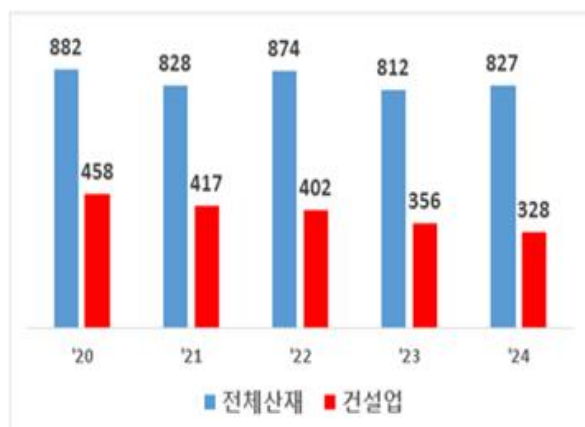
【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전체산업, 건설업) 】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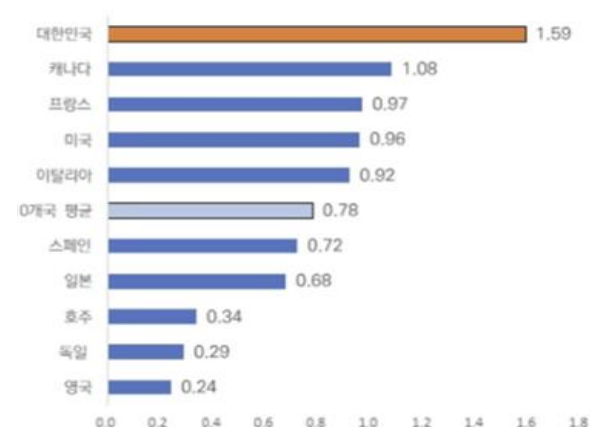
2020년 이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고 2024년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28명(7.9%, 356 → 328명) 감소한 328명으로 확인되나, 전체 산업 사망자 수의 39.7%에 해당하고,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59‰) 또한 타 국가들(영국 0.24‰, 독일 0.29‰, 호주 0.3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연도별 산재사고 사망자 】



※자료: 국토교통부

【 '23년 국가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는 건설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 주체이나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는바 발주자 권한에 맞는 안전관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시공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사업 참여 주체별로 역할 및 책임을 분담하여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이에 제정안은 발주자, 안전자문사, 설계자, 시공사, 하수급시공사, 감리자, 건설종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³⁾들에게 그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건설공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관련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⁴⁾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건설현장의

2) 최수영, “건설사고 저감, 발주자 중심의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해야: 영국 CDM제도, 시공 이전단계부터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분배”, 대한건설진흥회, 국토와교통 제36권 제12호 통권425호, 2019. pp.67-69, 최수영, “CDM 제도로 본 영국 건설사업의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1호, 2021.pp.37-38. 참고

3)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발주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 나. 설계자
- 다. 시공사·하수급시공사(이하 “시공사등”이라 한다)
- 라. 감리자
- 마. 건설종사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건설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이관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각각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각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건설주체별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무를 부여하고 건설사고를 감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 검토 결과와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과 중복·경합되는 규정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포함되어 있어 과잉 규제 및 중복 처벌 우려가 있고, 영업정지에 같음
하여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건설업
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약 3%인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며, 근로자 안전
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건설안전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적용하도록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
견을 제출하였음.⁵⁾

한편,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동일 제명으로 2건의 법률안(의안번호 제
2211151호, 의안번호 제2213160호)⁶⁾이 2025.6.27.과 2025.9.22.에 각각 발의되
어 있음.

의안번호 제2211151호 법률안(이하 “제정안1”이라 함)은 2025.8.21.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국토법안심사소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제정안1 상정 당시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213160호 법률안(이하 “제
정안2”라 함)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정안1과의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작
성함.

5) 관련 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별 검토에 기재함.

6) “건설안전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11151호, 2025.6.27.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건설안전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13160호, 2025.9.22.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나.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2. “설계도서(設計圖書)”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내역서, 예정 공정표 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대도면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관련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설계도서(設計圖書)”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내역서, 예정 공정표 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대도면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관련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정 안 1	제 정 안 2
가. 발주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u>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다. 시공자·하수급시공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 라. 건설종사자 5.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u>나. 설계자</u> 다. 시공자·하수급시공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 <u>라. 감리자</u> 마. 건설종사자 5. “발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u> <u>나. 건설공사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자</u>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u> <u>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u> <u>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u>

제 정 안 1	제 정 안 2
8.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시공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 다. 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라.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10. “하수급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11.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을 말한다.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8.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시공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 다.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10. “하수급시공자”란 시공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 정 안 1	제 정 안 2
1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15.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기술 중 설	13.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4.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1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기술 중 설

제 정 안 1	제 정 안 2
계와 설계에 수반되는 계획·조사·측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설계자 다.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하는 자 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마.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말한다.	계와 설계에 수반되는 계획·조사·측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설계자 다.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하는 자 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마.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 정 안 1	제 정 안 2
1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9. “건설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0. “건설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임대,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공사등에 대하여 노무를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9.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0.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기술자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21. “건설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 나. 임대,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공사등에 대하여 노무를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항 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정안2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제정안1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1) 건설공사,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의 범위 확대 등

제정안1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7)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는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⁸⁾ 「정

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8)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⁹⁾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¹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¹¹⁾를 제외하고 있음.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이에 비하여, 제정안2는 제정안1에서 제외하고 있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건설공사를 정의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2에서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정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¹²⁾에 따른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준 확립과 산업재해를 예방 등을 위한 법의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¹³⁾ 제정안2도 “건설안전특별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1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3)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정의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건설사업자(안 제7호)’ 와 ‘건설기술인(안 제20호)’도 「건설산업기본법」 외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와 관련된 사업자 및 기술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건설공사’ 등 정의 규정 비교 】

구분	제 정 안 1	제 정 안 2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건설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업자

구분	제 정 안 1	제 정 안 2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인용 조문 삭제

제정안1은 발주자, 발주청, 하수급시공자, 도급, 하도급,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정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인용하여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제정안2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인용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정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거나,¹⁴⁾ 「건

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정의를 참고하여 수정 등의 방식¹⁵⁾¹⁶⁾으로 규정하고 있음.

1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정안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제정안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정안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을 말한다.

제정안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정안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제정안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발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건설공사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자

이는 제정안2 제2조제2호에서 건설공사의 정의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외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에 따라,

발주자, 발주청, 하수급시공자, 도급, 하도급,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정의도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¹⁷⁾에 따른 건설공사와 관련된 개념에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발주자’ 등 정의 규정 비교 】

구분	제 정 안 1	제 정 안 2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	-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

17) 「건설기술 진흥법」도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구분	제 정 안 1	제 정 안 2
		다) -건설공사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자
발주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시공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 다. 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라.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 다.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하수급 시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	-시공사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건설 엔지니어링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구분	제 정 안 1	제 정 안 2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
감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건설사업 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3) 건설공사 참여자에 설계자 및 감리자 명시

제정안1은 ‘건설공사 참여자’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및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공사·하수급 시공사(이하 “시공사등”이라 함), 건설중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2는 이 중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삭제하고, ‘설계자’와 ‘감리자’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건설산업특별법안”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¹⁸⁾ 제2장제1절부터 제6절까지에서 각각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등, 감리자, 건설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정안2는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표현하기보다는, 안 제2장의 구성 체계와 같이 ‘설계자’, ‘감리자’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제2장) 구성 체계 】

구 분	제정안1	제정안2
제1절	일반 원칙	일반 원칙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4절	시공사등의 안전관리의무	시공사등의 안전관리의무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6절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18) 제정안1, 제정안2 공통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2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감리자’의 정의¹⁹⁾에 대하여, 감리자는 자격과 관련되기보다는 감리 업무의 수행자와 관련된 것이므로, 제정안2 제2조제17호다목의 ‘「건축사법」 제2조제4호²⁰⁾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건축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²¹⁾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축사협회는 ‘감리자’의 정의에 대하여, 제정안2 제2조제17호나목²²⁾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²³⁾ 업무

19) 제정안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마.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 제정안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를 수행하는 자'를 감리자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나, '건설사업관리'는 감리 외에도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임을 고려할 때 제정안2 제2조제17호나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동일한 이유로 제정안2 제2조제18호²⁴⁾에 따른 '감리'의 정의에서도 '건설사업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다.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 마.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4) 제정안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8.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다.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의무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중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시공자에게 확인시킨 후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의무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등·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중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 정 안 1	제 정 안 2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u>검토의견</u> ③ 제2항에 따라 <u>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검토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u>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u>검토의견</u>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u>검토</u> ③ 제2항에 따라 <u>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의 또는 검토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발주자 또는 설계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u>검토</u>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예산 소요 등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조정,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⑤ <u>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맡기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u>등을 포함한다)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⑤ <u>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를 받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⑥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맡기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자등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u> ②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안전관리 역량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10조(안전자문사 선임)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자문사로부터 자문 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자문사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u>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10조(안전자문사 선임)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자문사로부터 자문 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자문사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 등 이 법에 따른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안전관리의무 2.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나 역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사 종류나 규모별 안전자문사 선임기준, 안전자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2.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나 역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사 종류나 규모별 안전자문사 선임기준, 안전자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1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먼저, 조 제목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에서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 등’으로 변경되었고(제정안2 제8조 제목),

다음,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발주자가 심의(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또는 검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가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변경되었으며(제정안2 제8조제2항),

다음,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를

받은 경우 해당 결과를 설계자·시공사등·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함)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예산 소요 등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제정안2 제8조제4항 후단).

【 안 제8조의 주요 차이점 비교 】

구분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조 제 목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 등
안 제2항	－ 발주자는 연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u>검토의견</u>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중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u>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시공사에게 확인시킨 후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u>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u>검토</u>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안전보건대장 중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구분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 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u>검토의견</u>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u>검토</u>
안 제4항	-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u>검토의견</u>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u>검토</u>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u>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예산 소요 등(「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조정,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을 포함한다)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보장되어야 함을 조 제목에서 명확히 하고(제정안2 제8조 제목), 특히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제공되는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 절차를 명

시(제정안2 제8조제4항 후단)하며,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심의 또는 검토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건축법」 상의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제정안2 제8조제2항)한 것으로 생각됨.²⁵⁾

제정안2 제8조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성 심의 또는 검토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재심의 또는 재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적정한 비용·기간 제공, 안전자문사 선임에 관한 사항인 제정안2 제8조제1항 및 제10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²⁶⁾과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유발할 수

25) 「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6)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공사 외에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발주도 있음을 고려하여 제정안2 제8조의 제목 중 ‘적정 공사기간’을 ‘적정 기간’으로 수정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 기간과 대가가

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지급될 수 있도록 제정안2 제8조제1항에 ‘적정 기간·비용 세부 산정 기준의 하위 법령 위임’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제정안2 제8조제1항에는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에 공사기간 및 비용의 산정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제정안2 제8조제2항에는 ‘설계자’의 공기·공사비 산출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²⁷⁾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등’이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직접 산정한 후 그 적정성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7) 대한건설협회는 제정안2는 공기·공사비 산출을 설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은 설계자의 공기·공사비 산출을 기본업무가 아닌 ‘계약에 따른 추가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라. 설계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1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u> ②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정안2 제11조는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1에서는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가설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함)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제정안2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점에서 차이가 있음.

제정안2에서는 가설구조물과 관련된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제정안2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²⁸⁾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설계자·시공자·관계전문가·감리자의 역할을 하나의 조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제정안2 제11조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발생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2의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임.

대한건축사협회는 제정안2 제11조제1항에 대하여는 가설구조물,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 수립 및 시공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자가 수행하는 것이고, 설계도서에 자재 사양 등을 명기하여도 건축주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설계자의 공사비 산정 등에 무리가 있으므로 ‘「건축사법」 제2조제3호²⁹⁾에 따른 설계’는 제외³⁰⁾할 필요가 있고,

28) 제정안2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설계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현장여건을 감안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검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제정안2 제11조제2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설계도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30)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설계에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제정안2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제외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에 대한 표준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마. 시공사등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4절 시공사등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제4절 시공사등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u>이 경우 발주자 또는 설계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② <u>시공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u> ③ <u>제2항 및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u>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②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건설종사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아니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종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종사자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공자는 해당 건설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종사자를 작업에서 <u>임시</u>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조직)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u>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 ④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건설종사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아니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종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종사자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공자는 해당 건설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종사자를 작업에서 <u>일정 기간을 정하여</u>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관리조직)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제 정 안 1	제 정 안 2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4.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건설종사자를 대상으로 <u>작업내용과 안전규칙,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u>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u> ②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시공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4.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건설종사자를 대상으로 <u>공법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u>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제35조, 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공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u> ②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시공자

제 정 안 1	제 정 안 2
로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시공사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모든 시공사 ③ 시공자는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사등이 동시에 작업을 <u>수행하는</u>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u>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하여야</u> 한다. ④ 시공자는 제3항에 따른 <u>조정</u>을 시공사등이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굴착(掘鑿)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자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의 안전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u>하수급시공자는</u>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안전시설물 <u>직접 설치</u> 의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	로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시공사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모든 시공사 ③ 시공자는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사등이 동시에 작업을 <u>수행해야 할</u>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u>조정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u> 한다. ④ 시공자는 제3항에 따른 <u>시공계획서</u>를 시공사등이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굴착(掘鑿)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자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의 안전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로부터 안전성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성 확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u> ⑥ <u>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하수급시공자는</u>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안전시설물 <u>설치</u> 의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

제 정 안 1	제 정 안 2
무) ① 하수급시공자는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급시공자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시공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시공자는 제2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급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무) ① 하수급시공자는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급시공자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시공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시공자는 제2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급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정안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1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먼저, 제정안2 제12조는 제2항에 시공자가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3항에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³¹⁾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³²⁾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 안 제12조의 주요 차이점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신 설>	②시공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의 요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시공자는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공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심사·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사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분쟁 조정

이는 제정안2 제8조제1항³³⁾에서 발주자에게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공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용 변경 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공자에 대한 발주자의 ‘적정한 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가 준수될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음, 제정안1 제15조제1항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정안2 제15조제1항은 시공자가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공자가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제35조(영업정지), 제38조(과징금) 및 제42조(벌칙)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공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이는 안전시설물 설치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시설물 관련 안전관리의무를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은

33) 제정안2

제8조(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등·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대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가 안전시설물의 설치를 하도급하
더라고 그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
각됨.

【 안 제15조의 주요 차이점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①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 통적으로 사용하는 <u>안전난간, 추락방호 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 설물을 직접</u> 설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 으로 사용하는 <u>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야 한다. 이때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제35조, 제38조 및 제 4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공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u>

다음, 제정안1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은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
하도록 하고, 시공자등이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도
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정안2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에
서 둘 이상의 시공자등³⁴⁾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공자
등이 ‘시공계획서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34) 시공자등: 시공자·하수급시공자(제정안2 제2조제4호다목)

이는 조정한 사항을 ‘시공계획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동시 작업 수행 시의 안전을 위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15조의 주요 차이점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③ 시공자는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u>조정하여야</u> 한다.	③ 시공자는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u>조정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u> 한다.
④ 시공자는 제3항에 따른 <u>조정을</u> 시공자등이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제3항에 따른 <u>시공계획서</u> 를 시공자등이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정안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주요 의견의 다음과 같음.

고용노동부는 제정안2 제15조³⁵⁾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35) 제정안2

제15조(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시설물 설치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제35조, 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공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시공자로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시공자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모든 시공자

③ 시공자는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시공자등이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굴착(掘鑿)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

이미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사업장 내 근로자의 소속과 관계없이 총괄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혼재작업의 조정에도 구체적으로 규정³⁶⁾하고 있으므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안2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자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의 안전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로부터 안전성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성 확인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하수급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6)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대하여,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경합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바,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정안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3조(안전관리조직), 제14조(안전교육)]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다수 조문과 중복되어, 법 준수에 대한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제정안2 제12조제6항 및 제7항³⁷⁾에 대하여, 시공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사용자성 인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종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통한 간접적인 조치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축사협회는 제정안2 제12조제1항³⁸⁾에 대하여, 시공자가 착공

37) 제정안2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⑥ 시공자는 건설종사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아니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종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종사자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공자는 해당 건설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종사자를 작업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8) 제정안2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

전에 설계도서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경우 ‘발주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설계도서 등의 납품이 완료되면 발주자와 설계자 간의 계약된 업무가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서 ‘설계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설계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바.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안 제17조 및 제18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u>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고,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u> ④ 감리자는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u>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u>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u>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은 감리자는 시공 전에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u> ④ <u>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검토를 위해 설계자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⑤ 감리자는 시공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u>가설구조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와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u>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4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u>발주자에게</u> 지체 없이 <u>알려야</u> 한다. ⑥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경우 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6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감리자는 시공자의 제5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u>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하며, 발주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같다)에게</u> 지체 없이 <u>서면으로 알려야</u> 한다. ⑦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경우 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에 <u>의의가 있는 시공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⑧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발주자는 제7항에 따라 중지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사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⑩ 제6항부터 제9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해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1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따라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7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따라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정안2 제17조 및 제18조는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는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안 제18조는 감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1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먼저, 제정안1 제17조제3항은 감리자로 하여금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고,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2 제17조제3항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계획서³⁹⁾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공계

39) 시공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된 예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이 있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7절 시공 단계 업무

제61조(시공계획검토)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

확서를 제출 받은 감리자는 시공 전에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시공자’의 시공계획서 작성, 감리자에 대한 제출 의무와 ‘감리자’의 시공계획서 검토, 발주자 및 시공자에 대한 통보 의무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3절 공사시행단계 업무

제134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 종류별, 시기별)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② 공사감독자는 시공계획서를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정안2 제17조제4항은 감리자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검토를 위해 설계자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는데, 감리자의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검토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생각됨.

【 안 제17조의 주요 차이점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③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고,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은 감리자는 시공 전에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④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검토를 위해 설계자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제정안1 제17조제4항제1호는 감리자로 하여금 시공자가 가설 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는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2 제17조제5항제1호는 가설구조물, 안전시설물의 적정한 시공 여부 판단 기준으로 설계도서 외에 ‘시공계획서’를 추가하였음.

【 안 제17조의 주요 차이점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④ 감리자는 시공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u>가설시설물</u>, 안전시설물 등을 <u>설계도서대로</u> 시공 여부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⑤ 감리자는 시공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u>가설구조물</u>, 안전시설물 등을 <u>설계도서와 시공계획서에 따라</u> 시공하는지 여부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다음, 제정안1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은 감리자가 시공자의 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의 시공,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는 감리자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2 제17조제7항 및 제9항은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는 중지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공사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⁴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이후

40) 유사 입법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하여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

와 관련된 시공자의 이의제기 및 발주자의 공사재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1 제17조제5항은 감리자가 공사중지를 명령한 경우 ‘발주자’⁴¹⁾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2 제17제6항은 ‘발주자(발주청⁴²⁾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하며, 발주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⁴³⁾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1조,

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건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1) 제정안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발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나. 건설공사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자

42) 제정안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같다)’로 표현하여, 공공 건설공사는 발주청에, 민간 건설공사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공공과 민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공사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함)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고, 제정안2 제17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의 ‘발주자’도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주무관청’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부터는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주무관청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유의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제정안2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26조(건설공사 현장점검), 제2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추정), 제28조(건설사고 신고), 제29조(건설사고 조사 등)의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해 행정기관 등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발주자’를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주무관청’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의 주요 차이점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4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u>발주자</u> 에게 지체 없이 <u>알려야</u> 한다.	⑥ 감리자는 시공자의 제5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u>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하며, 발주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같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u> 한다.
⑥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경우 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⑦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경우 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신 설>	⑨ <u>발주자는 제7항에 따라 중지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사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u>

제정안2 제17조 및 제18조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주요 의견의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제정안2 제17조제5항제1호에 대하여, 가설구조물 및 안전시설물의 시공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설계단계

에서 형식·배치 등을 고려하기 곤란하므로, 가설구조물, 안전시설물 등의 적정한 시공 여부 판단 기준에서 ‘설계도서’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제출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정안2 제17조제1항 및 제9항에 대하여, 경미한 위반 상황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고 모든 공사 중지 명령의 해제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경우 발주자, 감리자, 시공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⁴⁴⁾의 입법례와 같이 중재대해 발생과 관련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제정안2 제18조제2항⁴⁵⁾에 대하여, 감리자가

44)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건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5) 제정안2

제1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7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2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사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감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②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따라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안 제20조 및 제21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공자는 <u>제1종시설물의</u>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u>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u>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u>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u>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u>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기관은 그 결과를 시공자와 국토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공자는 「<u>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u>」 제7조제1호에 따른 <u>제1종시설물의</u>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u>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u> 받아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8조제6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u>발주자</u>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발주자가</u>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기관은 그 결과를 시공자와 국토

제 정 안 1	제 정 안 2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u>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u>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u>은 제6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및 그 검토결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공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u>발주자</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u>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자</u>는 제6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및 그 검토결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로 하여금 시공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u>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 ⑪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제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출·승인의 방법·절차와 안전 점검의 시기·방법, 대가(代價) 및 안전 점검 기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u>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u>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u>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승인의 방법·절차와 안전 점검의 시기·방법, 대가(代價) 및 안전 점검 기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u>가설구조물 설치 계획이 포함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u>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u>발주자는</u>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2 제20조 및 제21조는 각각 안전관리계획 등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1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정안1 제20조제1항은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으로 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함)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2 제20조제1항은 ‘제1종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로 명확히 하고,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제출·검토·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정안2 제8조제6항⁴⁶⁾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발주자가 받은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와 시공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였음.

【 안 제20조의 주요 차이점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공자는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

46) 제정안2

제8조(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 등) ⑥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u>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u>	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u>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8조 제6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다음, 제정안1 제21조제1항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제정안2 제21조제1항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가설구조물 설치 계획이 포함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검토·승인 절차를 안전관리계획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음(제정안2 제20조 제1항).

한편, 제정안2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발주자’는 제정안2 제17조제6항⁴⁷⁾에 따라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주무관청’이 해당됨.

47) 제정안2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⑥ 감리자는 시공자의 제5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하며, 발주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같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안 제21조의 주요 차이점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u>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u>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u>가설구조물 설치 계획이 포함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u>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u>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u>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정안2 제20조 및 제21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제정안2 제20조 제2항·제5항 및 제21조제2항⁴⁸⁾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결과, 안전점검 결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검토 결과 통보 대상에 ‘감리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제출함.

48) 제정안2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기관은 그 결과를 시공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건설공사 시공과정 영상촬영(안 제20조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신 설>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⑩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⑪ 시공자는 제10항에 따른 영상기록계획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건설종사자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⑫ 시공자는 제10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건설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발주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건설공사가 종료된 후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발주자는 제1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상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운영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영상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⑭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점검, 부실 측정 및 건설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인허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이용·폐기의 기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⑯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

제 정 안 1	제 정 안 2
	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정안2 제20조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는 시공자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⁴⁹⁾의

4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나. 철도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나. 철도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건설공사의 시공과정 영상 촬영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24조⁵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

구분	제1종시설물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갑문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다. 계류시설	갑문시설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라. 보 마. 배수펌프장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자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종시설물 해당 사항 기재

50)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

시공자에게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고시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3조제5항 및 제6항⁵¹⁾은 건

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
 - 가.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5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63조(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장소에서 촬영

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제63조제5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⁵²⁾에 따른 주요 구조부 시설물에 대하여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가. 암반선 확인 사진
- 나. 매물, 수중 구조물
-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관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촬영일자가 표시된 동영상)을 말한다.)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5항과 제6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구분	주요 구조부
건축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플랜트	기초, 설비 서포터
교량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 콘크리트 슬래브, 라멘구조부, 교량받침, 주탑, 케이블부, 앵커리지부
터널	쏿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철근콘크리트라이닝, 세그먼트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갱구부 사면
도로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절토부, 성토부
철도	콘크리트궤도, 승강장, 지하역사 구조부, 지하차도, 지하보도, 여객통로
공항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쓰레기·폐기물처리장	기초, 콘크리트 구조부, 설비 서포터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철골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하수·오수처리장	수조 구조부, 수문 구조부, 펌프장 구조부

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촬영일자가 표시된 동영상
을 말함)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함(제63조제6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2 제20조제10항부터 제16항까지는 「건축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규정된 공사과정 촬영제
도를 “건설안전특별법”에 도입하고, 영상기록계획의 안전관리계획 포
함, 영상정보의 보관, 현장점검·부실측정·건설사고조사를 위한 영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구분	주요 구조부
배수펌프장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유입수문, 토출수문, 통문, 통관
항만·어항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널말뚝, 토류벽, 강말뚝, 강널말뚝, 상부공, 직립부, 콘크리트 블럭, 케이슨, 사석 경사면, 소파공, 기초부
하천	하구둑, 보, 수문 본체, 문비, 제체, 호안
댐	본체, 여수로, 기초, 양안부, 여수로 수문, 취수구조물
옹벽	지반, 기초부, 전면부, 배수시설, 상부사면
절토사면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공동구	공동구 본체
삭도	상부앵커, 하부앵커, 지주, 케이블

자.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안 제24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u>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u>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u>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설계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u>현장여건을 감안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u>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시공자는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u>검토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2 제24조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1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1 제24조제1항은 시공자로 하여금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계전문가⁵³⁾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53) 제정안1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제정안2 제24조는 제1항에 ‘설계자’로 하여금 동바리, 거꾸집,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함)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설계자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는 시공자가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현장여건을 감안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였고,

제3항에 ‘시공자’는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 안 제24조의 주요 변경 사항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신 설>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u>설계자는 동바리, 거꾸집,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u>

제 정 안 1	제 정 안 2
	<u>적 안전성을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u>
①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u>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u> 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u>현장여건을 감안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u> 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시공자는 <u>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u>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건설공사의 가설구조물에 대해 설계자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확인, 시공자의 안전한 설치와 감리자의 안전한 설치 여부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제정안2 제24조제1항에 대하여, 가설구조물의 예시로 들고 있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식·배치가 수시로 변경되어 설계자가 설계단계에서 그 안전성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가설구조물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도 유사한 취지의 의견을 제출함.

차.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안 제28조 및 제29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28조(건설사고 신고) ① <u>시공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② <u>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시공자가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28조(건설사고 신고) ① <u>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 <u>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신고·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9조(건설사고 조사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의 제공을 해당 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u>	제29조(건설사고 조사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자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를 해당 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u>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③ 국토교통부장관, <u>시·도지사</u>,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및 제41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도서가 미흡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u>발주자 또는 시공사(수급인은 제외한다)</u>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u>시공사등과 건설사고 재발방지대책을</u> 수립하여 공사 중지를 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u>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u> 제4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재발방지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u>시·도지사</u> 및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및 제41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도서가 미흡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u>시공사는</u>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u>건설사고 재발방지대책을</u> 수립하여 공사 중지를 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u>공사 중지를 명한 자(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한다)</u>는 제4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재발방지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u>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현장에 작업의 중지를 명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 중지 지로 인하여 공사비용이 인상된 경 우 그 비용은 발주자와 설계자등이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의 미흡으로 인상된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한 때에는 설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u>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u>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조사계획을 공 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u>국토</u> <u>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u>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 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 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 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 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 책을 <u>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u> <u>인허가기관의 장</u>, 그 밖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u>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u>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 중지 지로 인하여 공사비용이 인상된 경 우 그 비용은 발주자와 설계자등이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의 미흡으로 인상된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한 때에는 설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u>발주자</u> 등 관계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u>국무</u> <u>총리, 시·도지사, 발주청(「사회기</u> <u>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u> <u>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u> <u>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u> <u>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및 인허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 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 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 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 책을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u> <u>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u>, 그 밖 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 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u>

제 정 안 1	제 정 안 2
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u>국토교통부장관이</u> 제36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u>국무총리가</u>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u>국무총리, 시·도지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u>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비용 중 일부를 발주자 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2 제28조 및 제29조는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1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먼저, 제정안1 제28조는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제정안1 제28조제1항),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시공자가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제정안1 제28조제2항)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제정안2 제28조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⁵⁴⁾(발주자는 제외)’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제정안2 제28조제1항),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제정안2 제28조제2항) 하고 있음.

이는 건설사고 발생의 신고 의무를 시공사 뿐만 아니라 안전자문사, 설계자, 하수급시공사, 감리자, 건설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건설사고 발생 사실이 신속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또한, 제정안2 제28조에 규정된 ‘발주자’는 제정안2 제17조제6항⁵⁵⁾에

54) 제정안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나. 설계자

다. 시공사·하수급시공사(이하 “시공사등”이라 한다)

라. 감리자

마. 건설종사자

따라 ‘발주청·인허기관의 장·주무관청⁵⁶⁾’이 해당되는바,

제정안2 제28조제1항에서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발주자’로 변경한 것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제외하고 주무관청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정안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변경 사항을 종합하면, 건설사고 신고 체계를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인허기관의 장·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발주청·인허기관의 장·주무관청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체계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55) 제정안2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⑥ 감리자는 시공자의 제5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하며, 발주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같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안 제28조의 주요 변경 사항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① <u>시공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① <u>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 <u>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시공자가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② <u>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발주자: <u>제28조에서는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주무관청을 말함.</u>

다음, 제정안2 제29조제1항, 제3항, 제8항은 제정안1 제29조제1항, 제3항, 제8항에서 건설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 건설사고 재발 우려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주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을 ‘발주자’로 변경하였음.

제정안2 제29조에 규정된 ‘발주자’는 제정안2 제17조제6항⁵⁷⁾에 따라

57) 제정안2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⑥ 감리자는 시공자의 제5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하며, 발주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같다)에게 지체 없이

‘발주청·인허기관의 장·주무관청⁵⁸⁾’이 해당되므로, 제정안2 제29조에서는 건설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 건설사고 재발 우려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주체에 ‘주무관청’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률에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주무관청⁵⁹⁾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건설사고 발생에 대해 그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안 제29조의 주요 변경 사항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u>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u>,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u>결과의 제공</u>을 해당 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u>발주자</u>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u>결과</u>를 해당 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u>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및 제41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도서가 미흡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u>발주자</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및 제41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도서가 미흡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u>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u> 등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u>발주자</u> 등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발주자: 제29조에서는 <u>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주무관청</u>을 말함.

한편, 제정안2 제29조제6항은 공사중지를 명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발주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

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⁶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현장에 작업의 중지를 명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권한과 “건설안전특별법”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및 해제 권한이 충돌하지 않도록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안 제29조의 주요 변경 사항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⑥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재발방지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재발방지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u>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현장에 작업의 중지를 명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60)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2 제28조 및 제29조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 신고, 사고조사, 공사 중지 명령,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공사중지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는 제정안2 제29조제7항61)에서 설계도서의 미흡으로 인상된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한 때에는 설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제정안2 제29조제7항 단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계도서 미흡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설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소송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점, 현재도 설계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1) 제정안2

제29조(건설사고 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및 제41조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도서가 미흡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건설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중지를 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사비용이 인상된 경우 그 비용은 발주자와 설계자등이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의 미흡으로 인상된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한 때에는 설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안 제30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30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6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무총리, 시·도지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무총리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무총리, 시·도지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비용 중 일부를 발주자 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2 제30조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1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권한을 국무총리로 이관하고 있음.

사고조사위원회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과 관련해서는, 항공·철도사고등⁶²⁾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⁶³⁾에 대하여,

6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6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고,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등을 사고조사에서 배제함으로써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률안⁶⁴⁾이 다수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임.

제정안2 제30조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도 건설사고 조사에 대해 유사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함으로써, 건설사고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고조사”란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철도사고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규명과 항공·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6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제2207321호, 2025.1.8., 김원익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2207331호, 2025.1.8.,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2207599호, 2025.1.17.,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2207704호, 2025.1.22., 이연희회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2209629호, 2025.4.7.,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제2207444호, 2025.1.10.,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다음, 제정안2 제30조는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있음.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⁶⁵⁾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부실공사 측정 등 사고조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장비를 갖추기에 한계가 있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고조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한 기관의 장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다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65)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제정안2 제30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상위의 행정기관으로서 재정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보다 다소 여유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추가적으로 건설공사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 사고조사 업무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타. 건설안전진흥기금(안 제33조)

제 정 안 2
제33조(건설안전진흥기금) ①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안전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8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2. 건설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3. 건설안전에 관한 인력양성 사업 4. 제23조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등 보조·지원 5.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안전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2 제33조는 건설안전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으로, 건설안전진흥기금은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정부의 출연금, 제38조⁶⁶⁾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건설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건설안전에 관한 인력양성, 제23조⁶⁷⁾에 따른 스마트 안전관리 등 보조·지

66) 제정안2

제3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에게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제정안2

제23조(스마트 안전관리 등 보조·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시공자등에게 무선안전장비(「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항 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인공지능기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과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지원의 대상·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원,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⁶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조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

고시한다.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는 입법례가 있음.

제정안2 제3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건설안전 분야에 특화된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 제고를 지원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설안전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정안2 제33조에 동의하는 입장임.

파. 영업정지(안 제35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34조(영업정지)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u>건설사업자가</u>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및 <u>제17조제6항</u>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u>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u> 및 <u>제7항</u>에 따른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u>건축사가</u>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	제35조(영업정지) ① <u>국토교통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u>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u>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및 <u>제17조제7항</u>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u>시·도지사는</u>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u>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u>에 따른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u>시·도지사는</u>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u>국토교통부장관</u>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u>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u>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u>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u>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u>를 명할 수 있다. <u>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u>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u>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업무정지</u>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u>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제정안2 제35조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1 제34조와의 주요 차이점을 다음과 같음.

제정안1 제34조는 처분권자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제정안2 제35조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제정안2 제35조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권자는 ‘시·도

지사'로(제정안2 제35조제2항),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제정안2 제35조제3항)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사업법」 등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권자⁶⁹⁾를 반영하여

69)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택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의2·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정안2 제35조제4항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제정안1 제34조제4항과 차이가 있음.

제정안2 제35조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정안2 제35조제1항⁷⁰⁾에 대하여, 제정안2 ‘제12조제1항(시공자의 설계도서 검토) 및 제4항(시공자의 하수급시공자에 대한 위험요인 정보 제공)’⁷¹⁾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보기 어려운 위반까지 포함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0) 제정안2

제35조(영업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1) 제정안2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설계자에게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④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제정안2 제35조에 대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하.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및 업무 계속 (안 제36조 및 제37조)

제 정 안 2

제3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하수급시공자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시공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공자는 해당 하수급시공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7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업무 계속) ① 제3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정안2 제36조 및 제37조는 각각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업무 계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먼저, 제정안2 제36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하수급시공자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안 제2항),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3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음, 제정안2 제37조는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전단),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안 제1항 후단),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2항)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 「건축법」 제22조의2 등의 입법례⁷²⁾를 “건설안전특별법”에 규정하려

72)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③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사업자로 본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그 포괄승계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축사법」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전기공사업법」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공사업자로 본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본다.

④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받은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인해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이 중단되어 계약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 등과 동일한 취지로 영업정지 처분 후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공사 또는 업무 계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2 제36조 및 제37조에 동의하는 입장임.

거. 과징금(안 제38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u>제35조(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에게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u> <u>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정안2 제38조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1 제35조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먼저, 제정안1은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제정안2는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억원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였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제정안2는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제정안1과 차이가 있음.

【 제정안1 제35조 및 제정안2 제38조의 주요 차이점 비교 】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2 제38조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 이내(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

거나 산정이 곤란한 영세업체 등의 경우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정안²에 동의하며, 관계 기관 의견조회 결과와 과징금의 규모가 과다하여 축소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다수 제출된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에 대하여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2025.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과징금 규정 신설을 추진⁷³⁾하고 있으므로, 양법의 적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사고발생 현상이 아닌 관련 업종·분야의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 수준이 매우 과도하고, 사망자 발생이라는 결과 책임이 동일함에도 주력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달라지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사고발생과 관련된 계약·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3)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9.15. p.23.

□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

○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예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도입(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자 수·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과징금 심사위원회 신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절차 등 구체적 방안 마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시공자보다 소규모이고 대가가 낮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동일한 과징금 및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공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과징금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너. 벌칙(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 <u>제9조제1항</u> 및 제2항을 위반한 발주자 3.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설계자(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4.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거나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시공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시공자 6. 제1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감리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 <u>제9조제2항</u>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3.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설계자(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4.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거나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시공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시공자 6. 제17조제1항, 제3항, <u>제5항</u> 및 <u>제8항</u>을 위반한 감리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제 정 안 1	제 정 안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시공사 - 제2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시공사 -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시공사 -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한 시공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u> -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시공사 - 제2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시공사 <u>제20조제10항에 따른 영상을 촬영하지 아니한 시공사</u> <u>제20조제14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발주자 또는 시공사</u> -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시공사 -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안전자문사</u> -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한 시공사

제 정 안 1	제 정 안 2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시공자 4.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설계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

제정안2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는 벌칙 규정으로, 제정안1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와의 주요 차이점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추가로 규정한 것임.

구체적으로,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안 제8조제6항⁷⁴⁾ 위반),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과정 영상을 촬영

74) 제정안2

제8조(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 등) ⑥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한 시공자(안 제20조제10항⁷⁵⁾ 위반), 시공과정 촬영 영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발주자 또는 시공자(제20조제14항⁷⁶⁾ 위반)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나 역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조언하지 아니한 안전자문사(안 제10조제3항⁷⁷⁾ 위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시공자(안 제21조제1항⁷⁸⁾ 위반),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설계자(안 제24조제1항⁷⁹⁾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75) 제정안2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⑩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76) 제정안2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⑭ 발주자 및 시공자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점검, 부실 측정 및 건설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인허가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7) 제정안2

제10조(안전자문사 선임) ③ 안전자문사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 등 이 법에 따른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2.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나 역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8) 제정안2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 설치 계획이 포함되는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은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사의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안 제38조제2항⁸⁰⁾ 위반)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준수의 실효성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제정안2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라 추가된 벌칙 】

제정안2 신설 벌칙 규정		벌칙
안 제43조제2항 제1호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발주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43조제2항 제4호	제20조제10항에 따른 영상을 촬영하지 아니한 시공자	
안 제43조제2항 제5호	제20조제14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발주자 또는 시공자	
안 제44조제1호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안전자문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44조제3호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시공자	

79) 제정안2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설계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80) 제정안2

제38조(과징금)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에게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제정안2 신설 벌칙 규정		벌칙
안 제44조제4호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설계자	
안 제44조제7호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려는 제정안2에 동의하며, 제정안2 제44조제1호의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안전자문사’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조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안전자문사’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더. 시행일(안 부칙 제1조)

제 정 안 1	제 정 안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정안1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정안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음.

이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시행의 유예기간에 차등을 둔 것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대하여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되, 다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등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입법례⁸¹⁾가 있음.

제정안2 부칙 제1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와 제도 정착 등을 감안하여 공사금액

8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